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343호

다. 제출일자 : 2022. 10. 17.

라. 회부일자 : 2022. 10. 21.

## 2.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 사무는 서울특별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교육, 복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승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기여하고자 사단법인 서울특별시교통회관에 위탁 중인 업무로서,
- 위탁기관이 2023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전문성 및 운영능력이 우수한 기관과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탁시설 개요

- 수탁기관: (사)서울특별시 교통회관(교통연수원)
- 위탁기간: '20.03.01.~'23.02.28.
-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1길 38-10
- 규모: 대지 1,650.1 $m^2$ , 건물 5,222.67 $m^2$ (지하1층, 지상5층)
- 주요시설: 강당(소규모/대규모), 스포츠실, 헬스장, 사우나실 등
- 운영인력: 16명(정규직 12명, 계약직 4명)

#### 나. 민간위탁(재위탁) 내용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23.1월 ~ '26.2월)
- 위탁금액 : 1,491백만원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 위탁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 위탁범위
  - 교육사업(운수종사자 교육, 강사선정 및 관리, 교재편찬 및 발간 등)
  - 복지·문화사업(운수종사자 복지쉼터, 헬스장, 스포츠, 대관 등)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의 수행
- 위탁사무:
  - 운수종사자의 교육
  - 운수종사자 등의 교양·취미활동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 운수종사자 등의 건강·휴식 및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등 운영 및 관리
- 시민에 대한 교통문화 계도·창달 사업
- “교육원”의 시설물·장비 등 유지관리 및 운영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다.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등)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제4항(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및 제12조(재계약)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10999호, '21. 10. 12.)

#### 라. 민간위탁(재위탁) 필요성

- 동 사업은 외부기관이 실시한 종합성과평가('19.6월)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등 민간위탁의 효과성이 입증되었음
- 택시운수종사자 교육·복지·문화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과 재위탁 추진하여 안정적인 업무 승계 도모를 위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등)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지정하는 연수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운수종사자 교육을 연수기관에 위탁 또는 의뢰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 시장

④ 시장은 연수기관의 시설, 인력 등을 감안하여 연수기관의 교육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 또는 문화분야의 비영리법인 등에 교육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탁자로 참여할 경우 각 분야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과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며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만료 6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수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은 1회에 한한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예산조치: '23년 예산 반영

다. 기타사항: 해당 없음

##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서울특별시 교통회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2월 만료예정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sup>1)</sup>에 따라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전문성 및 운영능력이 우수한 기관과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교통문화교육원은 서울시가 관련 법<sup>2)</sup>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2000년 설치한 이후 2001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등에서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현황

- 위치: 서울시 관악구 남현1길 38-10(남현동 1063-6번지)
- 규모: 대지 1,650.1㎡, 건물 5,222.67㎡, 지상5층, 지하1층
- 시설내용: 강당, 강의실, 사우나실, 헬스클럽, 식당, 어학실 등
- 위탁기간: 2021.03.01.~2023.02.28.
- 위탁현황
  - '01. 7. 19. ~ '04. 8. 31.(3년) : 최초위탁(수탁법인 :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 '04. 9. 1. ~ '07. 8. 31.(3년) : 재위탁(수탁법인 : (사)전택노련복지협회컨소시엄)
  - '07. 9. 1. ~ '10. 8. 31.(3년), '10. 9. 1. ~ '13. 11. 30.(3개월 연장) : 재계약  
(수탁법인 : (사)전택노련복지협회컨소시엄)
  - '13. 12. 1. ~ '16. 11. 30.(3년), '16. 12. 1. ~ '17. 5. 31.(6개월 연장) : 재위탁  
(수탁법인 : (사)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복지협회)
  - '17. 6. 1. ~ '20. 2. 29.(3년) : 재위탁(수탁법인 : (사)서울특별시교통회관)
  - '20. 3. 1. ~ '23. 2. 28.(3년) : 재계약(수탁법인 : (사)서울특별시교통회관)

## 나. 검토의견

### ■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사전절차 이행 여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함) 제4조<sup>3)</sup>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음

또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sup>4)</sup> 및 제10조<sup>5)</sup>에서는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기능 수행 및 운수종사자 교양·취미활동 지원 등을 위해 교통 또는 문화 분야의 비영리법인 등에 교육원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수종사자 교육 및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교양 프로그램, 건강·휴식 및 편의시설 등을 관리하는 교통문화교육원의 운영업무는 민간위탁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4)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교육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63번지 6호로 하며,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기능 수행**

2. 운수종사자 등의 **교양·취미활동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3. 운수종사자 등의 **건강·휴식 및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등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 또는 문화분야의 비영리법인 등에 교육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며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만료 6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수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은 1회에 한한다.

- 민간위탁 조례 제2조6)에 따르면 재위탁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위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에서는 시의회 동의 이전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무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개최된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서 “교육목적의 연수시설 본연의 기능보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로서 더 많이 이용되고 있어 시설 운영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의보류7) 되었으나 이후 재심의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음에 따라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관리지침”에서는 재위탁시8) 위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공모방식과 특정 민간단체 등을 위탁자로 지정하는 수의 방식이 있으나 서울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교통문화교육원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9)임

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위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20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조직담당관-24458, '22.7.26.)

-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목적의 연수시설 본연의 기능보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로서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계획에 대해 보완 후 재심의
- 사업비를 민간위탁금과 보조금으로 분할 산정하였으나, 민간위탁 교육사무와 일원화하여 민간위탁금으로 재산정 필요

8) 재위탁 추진절차-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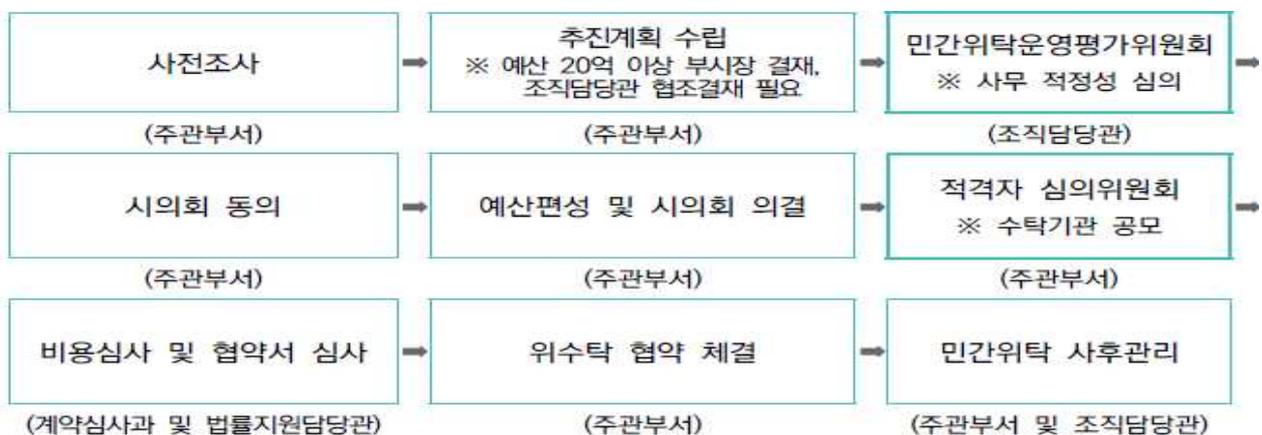
· 재위탁 공모절차

## ■ 민간위탁(재위탁) 적정성 여부

- 서울시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복지증진과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였음

또한 택시운수종사자 교육·복지·문화사업에 전문성과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안정적인 업무 승계 도모 차원에서 적정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전문 위탁기관의 풍부한 시설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 및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효율적인 측면에서 인정됨

- 다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지적받은 바와 같이 교육목적 외 시설 운영이 많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재심의로 인해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이 미뤄지는 등의 문제로 업무 공백 문제가 생겨 운수종사자 및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며 향후에 동일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재위탁 수의절차: 재위탁 공모절차에서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절차가 생략됨  
9)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택시정책과-31376, '22.6.23.)